

#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296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1월 25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주문

-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및 생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(이하 “노동조합법”）」 제71조제2항제3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‘하수도사업’을 추가하고, 「노동조합법 시행령」 별표1에 하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·건의함.

## 2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시 11개구, 경기도 3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서남, 탄천 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(이하 “공단”)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12일 (2021.10.18.~29.)에 걸친 파업이 이루어짐.
- 파업 기간 동안 서남, 탄천 물재생센터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됨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누적 문제와 일시적인 수질 위험수위가

수차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났고, 자칫 물재생센터가 비정상 운영될 경우 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.

- 따라서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 및 생태환경 보전을 제고하기 위해 「노동조합법」 제42조의2에 따라 일부 쟁의행위를 제한하고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동조합법에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기타사항 : 없음

### **4. 이송처**

가. 국회 : 환경노동위원회

나. 정부 : 고용노동부, 환경부

### **5. 첨부 :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**

#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- 최근 서울시 11개구, 경기도 3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서남, 탄천 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)의 노조와 사측 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12일(2021.10.18.~29.)에 걸친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.
- 이 기간 동안 파업이 지속되면서 서남과 탄천 물재생센터는 최소한의 인력(비노조원 2교대 근무)으로 운영되었고, 이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시적으로 방류수질에 이상이 나타나는 등 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.
-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대표적인 하수처리시설로 하수·분뇨를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, 물환경의 오염 또는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절한 수질관리 및 보전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.
- 동 시설이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비정상 운영될 경우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
- 물론, 근로자들이 임금·근로시간·복지·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을 제고를 위해 사측과 협의하고,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·태업·직장폐쇄

등의 쟁의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

- 다만, 물재생센터라는 시설의 특성상 파업 등의 문제로 시설이 비정상 운영될 경우 생활하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한강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, 이는 결국 서울시민의 공중위생, 보건 안전과 생태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
- 현행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이하 “노동조합법”）」 제71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은 공중위생사업의 하나로 분류하여 ‘공익사업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‘필수공익사업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‘필수유지업무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쟁의행위시 필수 유지업무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- 이에 하수도사업을 「노동조합법」 제71조제2항제3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, 「노동조합법 시행령」 제22조의2 별표1에 필수유지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파업 등 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「노동조합법」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.

2021. 11. 25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

[붙임 1]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[붙임 2]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법률안

[붙임 1]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현행	개정안
<p>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등) ①이 법에서 "공익사업"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1. - 5. (생략)</p> <p>②이 법에서 "필수공익사업"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수도사업, 전기사업, 가스사업,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</p> <p>3. - 5. (생략)</p>	<p>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상·하수도사업</u>, 전기사업, 가스사업,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</p> <p>3. - 5.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 2]

##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법률안

현행	개정안
<p>별표1</p> <p><u>필수공익사업별</u></p> <p><u>필수유지업무(제22조의2 관련)</u></p> <p>1. - 10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1. -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하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</u></p> <p>가. <u>하수도법 제2조 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</u></p> <p>나. <u>하수도법 제2조 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</u></p> <p>다. <u>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통합시스템과 계측·제어설비의 운영 업무</u></p> <p>라. <u>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긴급복구와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</u></p>